

산림경영계획 [ ] 인가서  
[ ] 변경인가서

인가번호: - -

경영계획구 명칭		
산림 소재지		
계획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10년간)	
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	성명	산림기술자 자격번호
산림경영계획서 확인자	직	성명
경영계획구 면적	만㎡	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을 [ ]인가 [ ]변경인가 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 ·  
특별자치도지사 ·  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

첨부서류

- 산림경영계획인가서의 경우: 산림경영계획서
-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의 경우: 변경 내용이 기재된 산림경영계획서

유의사항

-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해야 하며, 별채가 필요한 산림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-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
-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·허가(신고를 포함합니다)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인·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인가번호 작성요령

○ 연도-인가방법-일련번호(예: 2025-협업-1)

- 연도는 인가 연도를 적습니다.
- 인가방법은 공유림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공유, 사유림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중 일반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일반,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은 협업으로 적습니다.
- 일련번호는 인가순으로 적습니다.